

#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1,222,661	29,136,680
일반회계	941,543,052	28,246,292
특별회계	29,679,609	890,388
기타특별회계	29,679,609	890,3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9,932	10,798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940,051	238,2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638,190	259,146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822,000	294,660
수질개선 특별회계	54,514	1,635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0,100	60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45,320	22,36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88,807	8,664
주차장 특별회계	1,810,695	54,32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82,873천원(일반 4,000,000, 재해·재난목적 4,882,873)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